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2.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인동 동청사 건립예정지 및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예정지인 사유지 인의동 산38번지의 1필지와 (주)LS전선 안양공장 구미이전과 관련한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유지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의 1필지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당초 의결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대비 사유지 교환 면적이 감소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인동동청사 및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 조성 부지(교환)

- 토 지 : 2필지 51,572m²
- 기준가격 : 871,750천원(감정가 기준)

【 처분재산 】

□ (주)LS전선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 부지(교환)

- 토 지 : 2필지 22,933m²
- 기준가격 : 1,158,116천원(감정가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계				1건2필	51,572	871,750	1건2필	51,572	871,750
		토지				1건2필	51,572	871,750	1건2필	51,572	871,750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1건2필	51,572	871,750	1건2필	51,572	871,750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계				1건2필	22,933	1,158,116	1건2필	22,933	1,158,116
		토지				1건2필	22,933	1,158,116	1건2필	22,933	1,158,116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1건2필	22,933	1,158,116	1건2필	22,933	1,158,116	
건물 기타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2 필지	51,572	871,750				
1	임야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15,868	809,268	2010년 상반기	인동 동청사 건립 부지 교환	(주)LS전선	감정 평가액
2	"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산 33-7번지	35,704	62,482	"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 조성 부지 교환	"	"
3								
4								
5								
6								
7								
8								
9								

2009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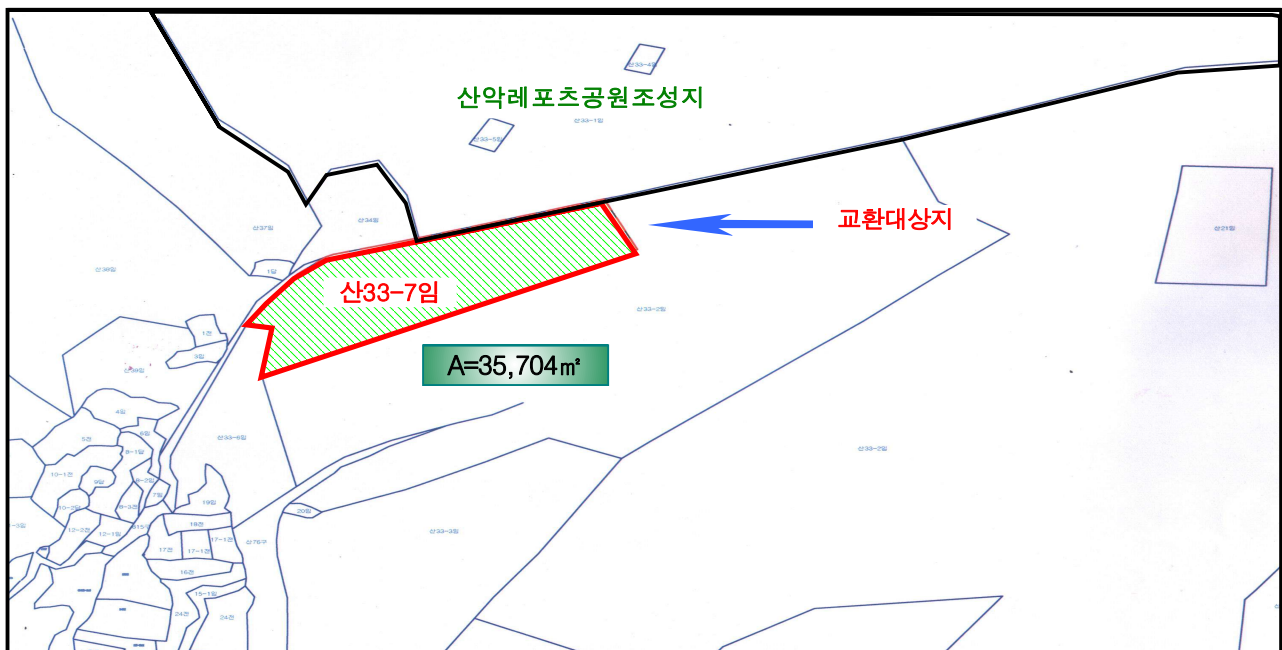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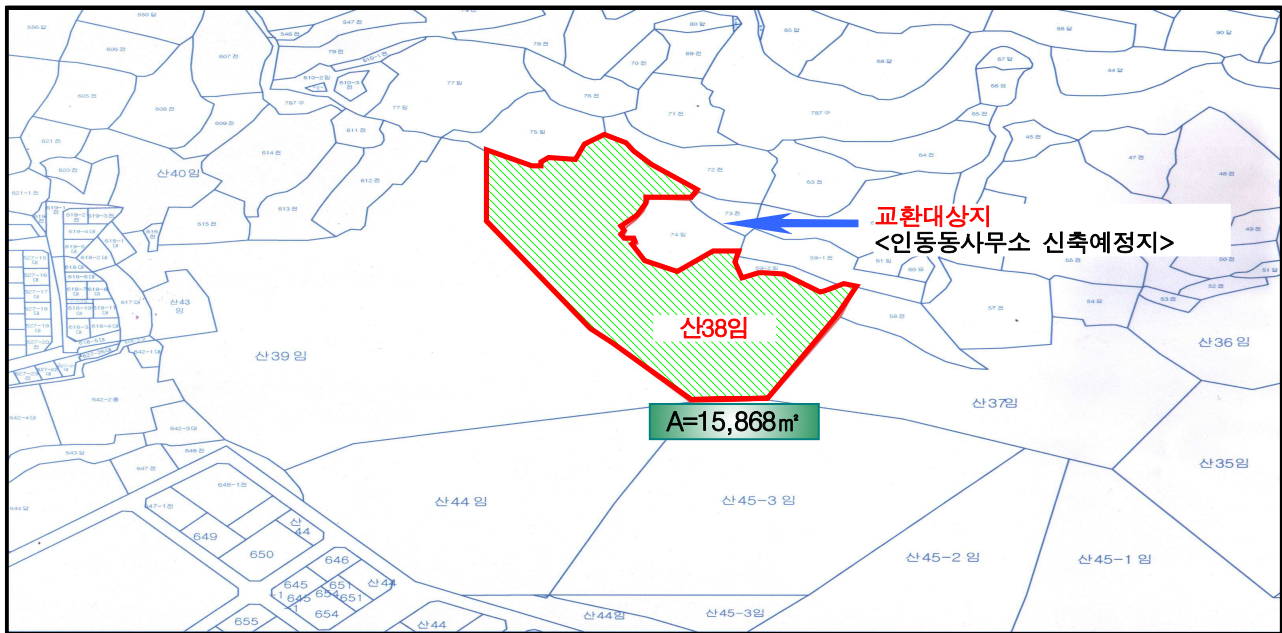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인동동사무소 건립 및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부지

○ 소재지 :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 51,572m²

□ 지적도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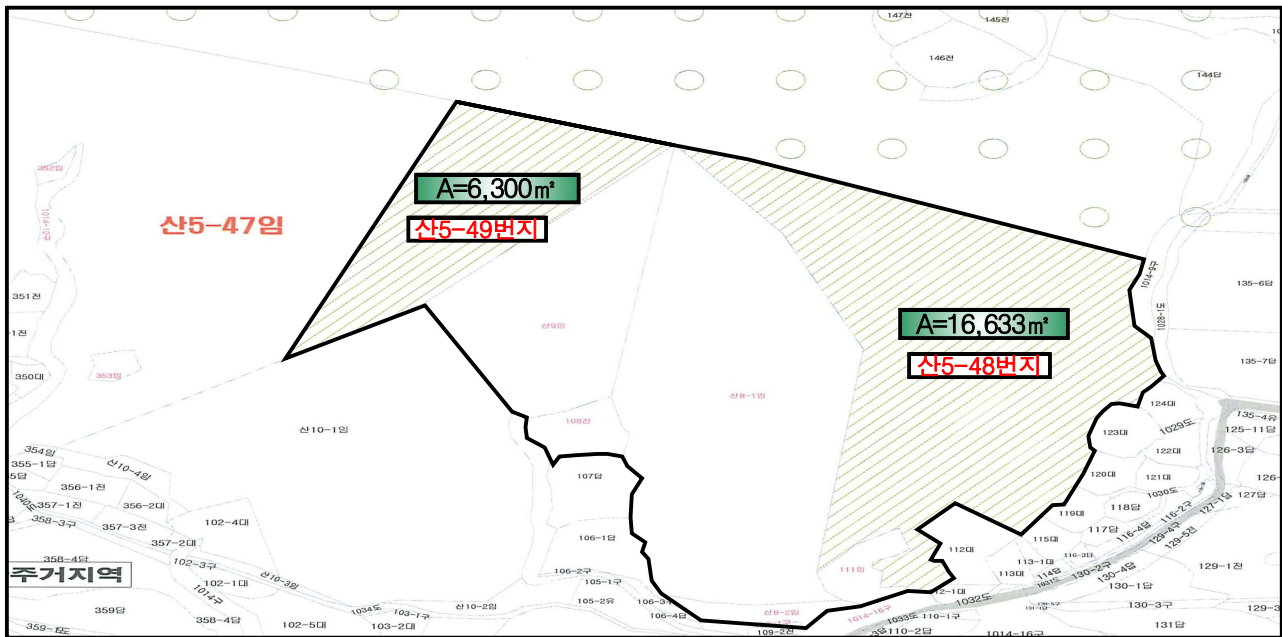
처분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주)LS전선 기숙사 건립 부지

○ 소재지 :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 22,933m²

□ 지적도



□ 위치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 ①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행정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